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회생절차 등 진행시 보증인에 대한 추심 금지〉
■ 신장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720호)

2025.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은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V . 관계기관의 의견	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신장식의원 등 22명
2. 제 안 일 : 2025. 4. 10.
3. 회 부 일 : 2025. 4.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심이 금지된 채무자에 대한 추심의 제한은 규정되어 있으나, 그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그 회생 계획 또는 면책 등의 효력이 보증인에게도 미치도록 개정하여야 경제적 파탄의 방지라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그에 발맞추어 현행법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임.

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인 경우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금지하여 보증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인 경우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금지하여 보증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¹⁾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 ----- ----- -----.
3의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1항제4호 또는 제6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4. · 5. (생략)	3의2. ----- -제44조제1항제3호의2, 제45조제1항(보증인에 관한 변제의 요구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58조제1항제4호, 제593조제1항제4호 · 제4호의2-----제600조제1항제3호 · 제3호의2에-----채권에----- 4. · 5. (현행과 같음)

1)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17호, 회생계획이나 면책결정이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보증인에 대한 추심 금지명령을 신설)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현행법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①제593조제1항제4호²⁾ 또는 ②제600조제1항제3호³⁾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는 ①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하는 경우, ②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어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는 경우 2가지임.

개정안은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경우로 ① 채무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중지명령) ①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채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4.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회생법 제44조제1항제3호의2, ② 같은 법 제45조제1항(보증인에 관한 변제의 요구의 경우에 한정한다), ③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4호, ④ 같은 법 제593조제1항제제4호의2, ⑤ 같은 법 제600조제1항제3호의2의 5가지 경우를 추가하고 있는데, 5가지 경우 모두 이 개정안이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17호, 신장식의원 대표발의)에서 신설되는 채무 변제 요구 금지의 경우임.

이는 각각 ① 회생절차개시 신청시 회생절차개시에 대한 결정시까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채무자의 보증인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하는 경우(채무자회생법 제44조제1항제3호의2), ② ①에 따른 중지명령으로 회생 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을 우려가 있을 때 신청 또는 직권으로 보증인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금지를 명하는 경우(같은 법 제45조제1항), ③ 회생절차개시결정시 채무자의 보증인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는 경우(같은 법 제58조제1항제4호), ④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결정시까지 신청 또는 직권으로 채무자의 보증인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하는 경우(같은 법 제593조제1항제제4호의2), ⑤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시 채무자의 보증인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는 경우(같은 법 제600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함.

이 개정안이 전제로 하고 있는 법률안(의안번호 제9717호, 신장식의 원 대표발의)이 의결되어 보증인에 대한 위의 5가지 변제 요구 금지 조항이 신설된다면, 개정안과 같이 채권추심자가 해당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것도 함께 금지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함.

따라서 이 법률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17호, 신장식의원 대표발의)이 의결되는 경우 함께 의결될 필요가 있음.

추가로, 이 법에서는 정의규정에서 채무자를 자연인으로 한정하면서 보증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⁴⁾ 채무자회생법에서는 이와 같이 한정함이 없이 명문상 법인인 채무자를 인정하고 있고⁵⁾, 보증인에도 법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므로,⁶⁾ 개정안에 따라 이 법에

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채무자”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자연인(보증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55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자본감소 등) ②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그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인 채무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다수의 판례가 보증인이 법인인 사례를 다루고 있음.

① 이 사건 보증채무약정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인 원고(현대건설 주식회사)와 주채무자인 피고는 대한주택보증에 대하여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자로서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에서 정한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전부의무자’에 해당하는데, 채권자인 대한주택보증이 이 사건 보증채무약정에 기한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회

신설되는 채무변제 요구 금지의 대상에 법인인 보증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Ⅲ. 관계기관 의견

법무부는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제한함으로써 보증인의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주채무자의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보증인 등에 대하여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절차개시 신청 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중지 또는 금지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고, 현행법에서는 채무자를 자연인으로 한정하면서 이에 보증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규정의 보증인이 법인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만일 법인 보증인

생절차에 참가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대한주택보증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가진 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없고, 다만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변제 등으로 그 채권을 전액 소멸시킨 경우에만 그 구상권의 범위 안에서 대한주택보증이 가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09388 판결]

② 피고(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14. 6. 9. 주식회사 케이사이니지(이하 ‘케이사이니지’라 한다)와 사이에 케이사이니지가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엘지유플러스’라 한다)와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케이사이니지가 엘지유플러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원고는 케이사이니지가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은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

이 포함되는 경우 개인회생 뿐 아니라 기업이 주로 대상이 되는 회생절차와 관련된 보증인 등에 대한 채권자 권리행사까지 중지 또는 금지행위의 대상으로 확대되므로 이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고 기업신용에 영향을 미쳐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신용정보협회는, 개정안이 보증인 보호라는 긍정적인 의도를 담고 있으나 보증인에 대한 과도한 보호로 인하여 금융기관 및 일반채권자의 신뢰가 떨어져 보증제도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며, 법인이 채무자인 경우에도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제한한다면 설립·폐업이 자유로운 법인의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금지된다면 채무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회생절차를 악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0)6788-5054